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34
----------	-------

발의연월일 : 2018. 3. 28.

발의자 : 황희·박재호·안호영

고용진·민홍철·어기구

권칠승·조정식·기동민

정재호·이원욱·최인호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시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들을 도시공간에서 실제로 구현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시범도시를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단계부터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스마트도시 유관 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대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정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 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며,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 나. 스마트도시의 한 유형으로서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는 국가시범도시를 도입함(안 제2조제1호의2, 제35조 등).
- 다. 국가시범도시 내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창업지원과 투자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8호,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 라.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함(안 제23조의2).
- 마.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산업과 드론산업을 위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기업 확대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

(안 제37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바.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이고 활발한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모선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안 제38조).

사. 국가시범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활용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시범도시에 설치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과 용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의”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제6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
에 한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과 효율
적인 개발·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개발

2.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35조를 제48조로 하며, 제7장(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

제1절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시범도시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특례

제37조(개인정보 등에 관한 특례 및 보호) 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산업에 종사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별화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조치를 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검증기관에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산업에 종사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조치가 된 정보를 이

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한다.

제38조(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본다.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부터 제11호의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연구·개발 또는 치안·안보·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신고·평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치안과 안보 및 안전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1.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
2.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참여제한, 공동수급방식의 확대, 참여기업간 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 설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과 용도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절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운영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

장진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성 장진홍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한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 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성장진홍구역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47조(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 등)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혁신성장진홍구역 내에서 창업 및 혁신성장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직접 건축하거나 임대,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건축물 등의 건축·임대·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시범도시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9. (생략)

② ~ ⑦ (생 략)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6. • 7. (생략)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

1. ~ 8. (현행과 같음)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정된 경우에 한한다)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1. ~ 5. (현행과 같음)

6.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 9.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p>② ~ ⑤ (생략)</p> <p><u><신설></u></p>	<p>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u>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u></p>
	<p><u>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u></p> <p><u>과 효율적인 개발·지원 등 다</u></p> <p><u>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u></p> <p><u>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u></p> <p><u>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u></p> <p><u>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u></p> <p><u>개발</u></p>
	<p><u>2.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u></p> <p><u>협력체계 구축</u></p>
	<p><u>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p> <p><u>는 사항</u></p>
	<p><u>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u></p> <p><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u></p> <p><u>령으로 정한다.</u></p>
<p><u><신설></u></p>	<p><u>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지원</u></p> <p><u>등</u></p>
<p><u><신설></u></p> <p><u><신설></u></p>	<p><u>제1절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u></p> <p><u>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①</u></p>
	<p><u>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u></p> <p><u>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u></p> <p><u>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u></p> <p><u>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u></p>

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국가시범도시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

<신 설>

<신 설>
<신 설>

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
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특례
제37조(개인정보 등에 관한 특례
및 보호) ① 국가시범도시 내
에서 스마트도시산업에 종사하
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는 수집된 「개인정보 보
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
인정보(「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개
인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

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하 “비식
별화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
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
조, 제19조 및 제21조,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
조 및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식별화조치
를 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
정한 검증기관에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
다. 이 경우 적정성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
트도시산업에 종사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비식별화조치가

<신 설>

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자체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적용한다.

제38조(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공급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스마트 도시건설사업”으로 본다.

<신 설>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10호부터 제11호의2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연구·개발 또는 치안·안보·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신고·평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치안과 안보 및 안전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1. 「전파법」 제19조의2제1항

에 따른 무선국 신고

2.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
업을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시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에서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사업
에 관하여 기업규모에 따른 참
여제한, 공동수급방식의 확대,
참여기업간 협력방안 등 구체
적인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신 설>

<신 설>

특례) 국가시범도시에 설치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과 용도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절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혁신 성장진흥구역의 지정·운영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

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 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4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한 기업(이하 “입주 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조세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p><u><신 설></u></p> <p><u>제7장 벌칙</u> <u>제35조(과태료) (생 략)</u></p>	<p><u>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u></p> <p><u>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u></p> <p><u>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u></p> <p><u>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u></p> <p><u>제47조(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 등)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혁신성장진흥구역 내에서 창업 및 혁신성장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등을 직접 건축하거나 임대, 운영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건축물 등의 건축·임대·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8장 벌칙</u> <u>제48조(과태료) (현행 제35조와 같음)</u></p>
---	---